

화재보험요율의 주요 변경내용 소개

1996년에 일반손해보험에 일부 자유요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요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별 경쟁요율체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금년에는 특히 화재보험종목의 요율규정 중 많은 부분에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글 | 정광제 협회 특수업무부 차장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요율제도는 인가형태에 따라 인가 및 비인가요율, 경쟁의 여하에 따라 협정 및 비협정(자유)요율로 구분되고 있으며, 요율체계는 사전에 정부가 인가한 보험료를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가요율체계와 협정요율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12월,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이익 증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일반 손해보험에 일부 자유요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부가하여 개별적으로 요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별 경쟁요율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는 보험업법 제176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매년 보험산업 전체의 실적통계를 기초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회사의 가격결정업무를 지원, 표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각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사업비를 부가한 영업보험요율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가입을 돋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화재보험종목의 요율규정 중에서 많은 부분에 조정이 발생하여 요율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화재보험요율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2. 주요 변경 내용

■ 표 1. 화재보험요율의 주요 변경 내용

관련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공지할인	20% 적용(주택, 일반물건)	1, 2급 구조건물 적용 제외, 3, 4급 구조건물 10% 적용
특수건물 특약요율	추가 보험료 부가 안함	추가 보험료 부가함
개별할인할증	15% 적용(주택), 17% 적용(일반, 공장물건)	10% 적용(주택, 일반, 공장물건) 단, 특수건물 제외

3. 주요 변경 내용 해설

가. 공지할인 변경

- (1) 건물 구조급수 3급 또는 4급 건물의 주위에 공지가 있고, 그 공지거리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10%의 할인을 적용한다.

■ 표 2. 공지할인율 표

대면건물의 구조 ^(주1)	1급, 2급	3급, 4급
공지거리 ^(주2)	7m 이상	13m 이상

(주1) 대면건물 : 당해건물의 벽면으로부터 각각 최단거리에 있는 건물(부속시설, 가설물 등 제외)을 말한다.

(주2) 공지거리 : 두 건물의 가장 가까운 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다만,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선을 외벽면으로 본다.

(2) 할인적용 및 비적용건물의 손해율 격차가 존재하여, 할인제도는 존속하고 인접건물연소에 의한 보험금비율의 미비로 할인율 수준을 10%로 축소하였다. 또한 인접건물연소에 의한 손해율이 1, 2급 0.8%, 3, 4급 4.7%로 1, 2급 건물을 할인의 유의성이 적음에 따라 변경하였다.

나. 특수건물 특약요율 신설**(1) 요율**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분리에 따라 특약요율을 신설하였다. 요율은 현행 풍수재위험담보특약요율의 주택 4%, 일반 9%, 공장 19% 수준으로 신설하였다.

(2) 단기요율

풍수재위험담보(추가) 특약요율의 단기요율에 따른다.

(3) 등지급별표

풍수재위험담보(추가) 특약요율의 등지급별표(7등지)에 따른다.

**다. 화재보험 개별 할인 · 할증기준(SRP) 변경**

(1) 등급요율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율산출시 개별 물건별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요율의 공평성을 실현하며, 아울러 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을 통해 손해방지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위요율체계를 변경하여 보완하였다. 단, 주택화재보험, 재보험자의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물건별 적용한도 및 기준**■ 표 3. 화재보험 개별 할인 · 할증의 적용한도 및 기준**

보험종목	물건	적용한도	적용대상 및 보험계약
화재보험	일반물건	±10%	보험가입금액 5억원 이상 또는 SRP 적용전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단, 특수건물 할인율 적용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물건	±10%	보험가입금액 5억원 이상 또는 SRP 적용전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단, 특수건물 할인율 또는 우량물건할인 적용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적용상의 유의사항

화재보험의 개별 할인할증 적용대상계약은 위험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증권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위험기준은 일반물건의 경우 건물 동 단위, 공장물건은 구내 단위이며, 특수건물 및 우량물건 할인 적용계약은 위험기준으로 판정한다.

라. 기타 변경내용

- (1) 건물규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내화성능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추가하고, 방재시험연구원 인증품을 내화구조인증품으로 명확화하였다.
- (2) 공장건물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의 구조급수 판정규정을 신설하여 요율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즉, 외벽의 샌드위치패널의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을 적용하며, 다만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하였다.
- (3) 물건별 옥외설비 및 장치의 건물구조급수 판정기준을 통합하여 건물규정에 신설하였다. 즉, 내화구조인 것은 1급, 불연재료로 만든 것은 2급, 가연재료로 만든 것은 4급이다.
- (4) 위험이 구분된 옥상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인정하였다.
- (5)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됨을 명기하였다.
- (6) 주상복합건물은 용도에 따라 각각 당해 약관 및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화재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파트 부대시설에 대한 요율적용과 주거 및 상업용도로 사용되는 주차장의 요율적용을 명확히하였다.
- (7) 건축 중인 건물은 방화구획 여부에 관계없이 요율을 적용토록 변경하였으며, 중·개축 부분의 건물구조별 판정을 명확화하였다. 또한 중·개축 또는 수선 중인 건물의 기존건물은 기존요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신설하였다.
- (8) 일반물건은 요율적용을 하나의 건물단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요율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요율적용상 혼란을 방지하였다.
- (9) 소화설비할인의 경우 적용연도에도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에만 적용토록 규정을 명확히하였다.
- (10)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특수건물 할인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중·개축중인 건물의 기존건물 및 수선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이 할인을 적용한다”고 추가하였다.
- (11) 공장종별요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요율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방화구획에 따른 요율적용 기준을 명시하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화재보험요율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요율은 사고발생 가능성, 즉 위험에 대한 적정 비율로, 이것은 현재 상존하는 위험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때 손해보험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협회에서 최근 손해율이 높아진 풍수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